

고 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-13호

도시관리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58호(2011. 9. 8.)로 결정(변경)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획지계획(공동개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2월 16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가. 결정(변경) 취지

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(지정)에 관한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.

나. 도시관리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-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동	기 정			변 경			비고
	위 치	면적(㎡)	획지계획	위 치	면적(㎡)	획지계획	
신길동	261대	1,071	공동개발 (지 정)	261대	1,071	공동개발 (지 정)	공동개발 (권 장)
	329-158대	8		329-158대	8		
	329-64대	16		329-64대	16		
	260-7대	47		260-7대	47		
	260-2도	54		260-2도	54		
	262-2대	16		262-2대	16		
	262-98대	16		262-98대	16		
	254-20대	202		254-20대	202		
	262-60대	17		262-60대	17	공동개발 (지 정)	
	262-61대	17		262-61대	17		

○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.

다. 관계도면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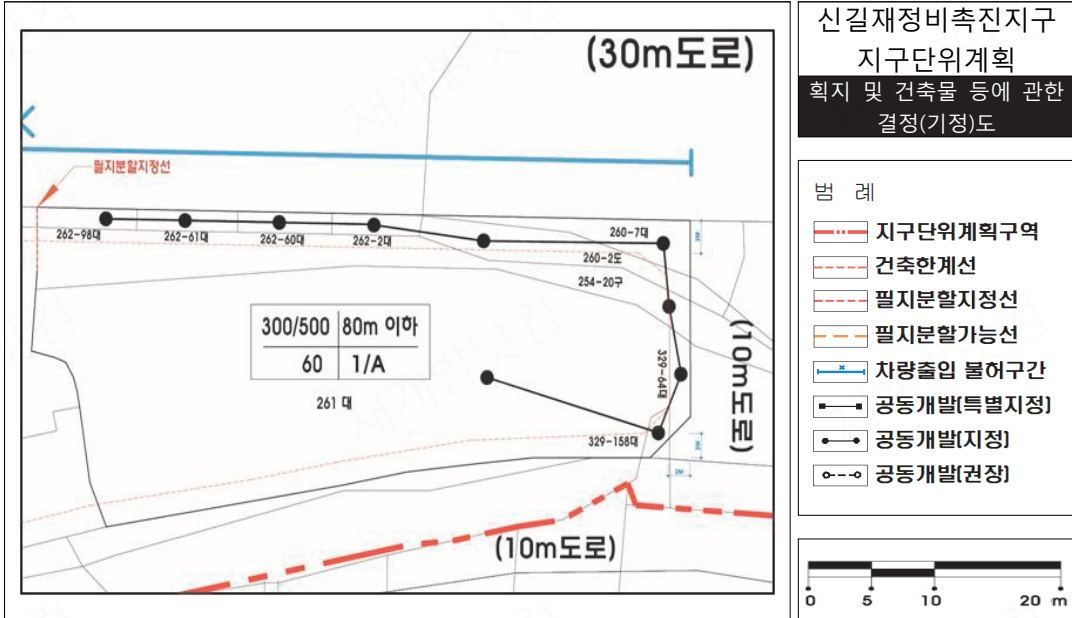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공보에 고시를 하기 위한 도면으로써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라. 열람장소: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(☎2670-3542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도시관리계획(신길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기정)



○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(변경)

